


<p>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법 집행국 Luis Lopez, 국장 대행</p> 	<h1>정보 공지</h1>	
<p>제목: 2024년 3월 5일, 대통령 예비선거-선거 당일 조기 투표 기간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거 종사자 보호</p>	<p>번호 2024-DLE-04</p>	<p>정보 문의: Luis Lopez, 국장 대행 법 집행국 (916) 210-6300</p>
<p>날짜: 02/28/2024</p>		

대상:모든 캘리포니아 지역 법 집행 기관

이 공지는 사전투표 기간과 2024년 3월 5일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 됩니다 .

이 공지는 공무원 직원에 대한 범죄 위협 폭력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 선거 방해 유권자 박을 금지하는 법률, 투표소 내 총기 소지에 관한 법률, 투표 감시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¹ 법 집행관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및 선거 종사자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주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소에서 어떤 상황에 대응할 때 무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유권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공지의 자료 외에도 법 집행 기관은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관련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박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38ra.pdf>);
-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의
부패(<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28ra.pdf>);
- 무단 투표용지 투입함(<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february/24048rd.pdf>); 그리고
- 선거 참관인(<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2/september/22233jl.pdf>).

공직자 직원에 대한 범죄 위협, 뇌물 수수, 갈취,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

선거 종사자들이 단순히 공무 수행을 이유로 폭력적인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내문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동안 선거 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관련 법률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공직자나 직원이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² (형법 §§ 69, 71.)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 § 422.)

¹ 이 공지에서 다루지 않은 선거 방해 협박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연방법 또는 지역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² 공무원이 공공장소에 있거나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권리가 있는 장소에 있는 동안 공무원의 사진을

선거 공무원과 그 직원, 임시직 근로자, 투표소 직원 등 공직자나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 §§ 67, 67.5; 선거법 § 18502, 하위 항목 (b).)

부당한 힘이나 공포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이나 기타 대가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형법 §§ 518, 520, 523.) 범죄적 갈취에 해당하는 공포는 예를 들어 본인이나 재산은 제3자에게 불법적인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형법 § 519.)

타인에 대한 폭행 /또는 구타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 §§ 240-243.)

선거 개입 협박을 금지하는 법률

선거 간섭

개인은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개표)를 진행하는 공무원³ 또는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5)를 방해하는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 18502, 하위 항목 (a).)

선거 전 또는 선거 중에 투표 기계, 투표 장치, 투표 시스템, 투표 집계 장치 또는 개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사용을 막기 위해 고의로 손상시키는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거법 § 18564, 하위 항목 (a).)

투표용지 수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 투표 목록 또는 공식 투표용지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돕는 행위.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부당하게 넣거나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것을 돕는 행위.
-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한 투표용지를 개표 전 또는 후에 투표 용기에 부정하게 투입하여 투표용지를 추가하거나 추가를 시도하는 행위.
- 선거 결과를 변경할 의도로 개표 또는 검표 종이거나 그 외의 시간에 투표용지, 다른 투표용지에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추가 또는 혼합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투표 명부, 투표용지 용기 또는 합법적으로 투표한 투표용지를 반출 또는 파기하거나, 반출 또는 파기를 시도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반출 또는 파기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찍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형법 § 69, 하위 항목 (a).)

³ 선거관리 공무원은 선거법 조항의 관리와 관련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 국무장관과 그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조항의 관리와 관련된 선거 공무원 임시직 근로자 투표소 직원, 선거구 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한 선거 공무원 그 직원은 선거 실시 지원 또는 투표 실시와 관련된 모든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법 § 18502, 하위 항목 (b).)

⁴ '선거 참관 또는 개표 실시'에는 선거 참관 절차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 18502, 하위 항목 (c).)

⁵ "선거에서의 투표"에는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위성 위치 포함)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우편으로 투표하고 투표한 투표지를 반납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 18502, 하위 항목 (d).)

- 선거 투표용지를 고의로 구금,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 유권자를 속여 비공식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수거할 목적으로 용기를 진열하는 행위.
- 유권자에게 비공식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선거법 § 18568.)⁶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명시된 선거 방해의 몇 가지 예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에서 사전 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법 집행 기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면 권고 사항입니다:⁷

- 투표소에 대한 접근 차단.
- 투표소 개장 또는 폐쇄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 개표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 투표 기기 또는 투표용지 반납함 훼손.
- 유권자를 속여 비공식 투표함에서 투표하는 행위.

유권자 협박 설득

유권자 협박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활동을 통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거나 자신의 선호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⁸ 유권자 협박은 모든 선거에서 금지되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 18540.)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위성 투표소를 포함한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투표할 때, 또는 우편 투표 투표용지 반송 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강제력,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선거법 § 18540, 하위 항목 (a), (c).)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 또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변경하거나 특정 선거에서 투표 또는 특정 인물 또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자제하도록 강요, 폭력 또는 협박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 18540, 하위 항목 (a).) 유권자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주선하여 강제, 폭력 또는 기타 강압 또는 협박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선거법 § 18540, 하위 항목 (b).)

도로변 투표소 또는 선거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의 유권자 설득 선거 운동

⁶ 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카운티 서기/선거관리국(CC/ROV) 각서 # 24048, "대통령 예비선거"를 참조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투표용지 투입함 투표용지 반납 요건," (2024년 2월 5일),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february/24048rd.pdf>>.

⁷ 선거법 §§ 18502, 18564;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CC/ROV Memorandum # 24038, '대통령 예비선거' 참조: 유권자 박, 금지된 유권자 도전," (2024년 1월 19일),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38ra.pdf>>.

⁸ 미국 법무부, 연방 선거법 위반 기소 8, (2017년 12월), 52페이지(18 U.S.C. § 594에 대해 논의).

유권자 협박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사항 외에도 유권자 설득 100피트 이내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기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도로변 투표소를 포함한 야외 장소, 는 (2) 투표소, 선거 관리 사무소 또는 위성 위치가 있는 건물의 입구.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기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도로변 투표소, 투표소가 있는 건물 입구, 선거 관리인 사무실 또는 위성 위치 등 야외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법 § 18541.) 이러한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에게 기표에 관해 말하는 행위, (2) 유권자 자격에 관한 표지판을 게시하는 행위, (3) 유권자에게 자격에 관해 말하는 행위(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특정 이의 제기 제외), (4) 투표소 출입 시 사진 또는 비디오 기술로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⁹, (5) 출입, 출차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거법 § 18541, 하위 항목 (a) 및 (b).) 이 섹션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 18541, 하위 항목 (d).)

또한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기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도로변 투표소, 투표소가 있는 건물 입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또는 위성 위치 등 야외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는 사람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 319.5, 18370.) 선거 운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후보자의 이름, 초상 또는 로고의 표시, (2) 투표 법안의 번호, 제목, 주제 또는 로고의 표시, (3)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법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단추, 모자, 연필, 펜, 셔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표시하는 행위; (4)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법안에 대한 가칭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5) 투표소 또는 우편 투표용지 투입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그 근처를 배회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법안에 대한 가칭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6) 발의안, 국민투표 또는 기타 청원서를 배포하는 행위. (선거법 §§ 319.5, 18370.) 모자, 티셔츠, 단추 등 유권자의 의류에 후보자의 이름, 초상 또는 로고를 표시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후보자의 이름, 초상 또는 로고가 포함되지 않은 정치 운동 또는 캠페인 슬로건을 의류에 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¹⁰ 캠페인 슬로건 또는 정치 운동 슬로건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미국을 위대하게(KAG), 과학을 위한 투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Build Back).¹¹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유권자 바로 근처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 투표 권유, (2)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기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 (3)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선거 운동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선거법 § 18541, 하위 항목 (c).) 이 섹션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 18541, 하위 항목 (d).)

유권자 협박의 예

⁹ 투표소에서의 카메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CC/ROV 각서 # 24021, '대통령 예비선거'를 참조하세요: 투표소 카메라, (2024년 1월 11일),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21ra.pdf>>.

¹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CC/ROV 각서 # 24028, '대통령 예비선거'를 참조하세요: 선거 운동 투표 과정의 부패 금지"(2024년 1월 12일), <사진 참조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28ra.pdf>>.

¹¹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CC/ROV 각서 # 24028, '대통령 예비선거'를 참조하세요: 선거 운동 투표 과정의 부패 금지"(2024년 1월 12일), 2페이지,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28ra.pdf>>.

다음은 캘리포니아 법과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이 발행한 서면 권고에 명시된 협박의 몇 가지 예이며, 사전 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법 집행 기관이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¹²

- 유권자를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투표 절차 또는 유권자 자격 요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
 - 예비 유권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이 투표 자격 요건임을 알리음 행위;
 - 유권자에게 투표를 위해 특정 유형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을 알리는 행위; 는
 - 유권자에게 투표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예: 투표 명부가 채권 추심, 체포 영장 확인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유권자의 인종, 민족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유권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 유권자의 시민권, 범죄 기록 또는 기타 투표 자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행위.
- 폭행, 구타, 폭력에 대한 언어적 위협 또는 물리적 폭력, 흥기 휘두르는 행위.
-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투표소 출입 또는 주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유권자 협박은 투표소 근처, 선거운동 활동이 금지된 100피트 구역, 그 밖의 장소 등 어디서 발생하든 불법입니다.

투표소에 무기 보안 요원 배치

캘리포니아주 법은 총기 소지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투표소, 투표 센터, 투표구 또는 기타 투표 또는 개표가 진행되는 지역이나 장소 또는 이러한 장소에 바로 인접한 거리나 인도¹³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 18544, 하위 항목 (a); 형법 § 26230, 하위 항목 (a)(25).) 이러한 제한은 해당 장소의 투표자, 투표 참관인, 투표소 내부 또는 외부 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 중 직접 투표를 하는 경찰관은 투표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 18544, 하위 항목 (b).)

한 , 제복을 입은 경찰관, 사설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을 포함하여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시 또는 카운티 선거관리관의 서면 승인 없이 투표소 근처에 배치되거나 투표소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 § 18544, 하위 항목 (a).)¹⁴ 18544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권자 협박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일 조항*) 또한 이 법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 18544, 하위 항목 (a), 18545.)

¹² 선거법 §§ 14240, 하위 항목 (b), 18370, 18540, 18541; 민법 §§ 51, 하위 항목 (b), 51.7, 하위 항목 (b);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CC/ROV 각서 # 24038, '대통령 예비선거' 참조: 유권자 박 , 금지된 유권자 도전," (2024년 1월 19일), pp. 1-3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4/january/24038ra.pdf>>.

¹³ "바로 근처"는 유권자가 명단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기표하는 방 또는 방에서 100피트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선거법 § 18546, 하위 항목 (b).)

¹⁴ 이 요건은 투표소에서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법 집행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면제되는 개인은 4가지 유형에 불과합니다:

-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있는 비무장 제복을 입은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
- 평화 경찰관의 자격으로 공식 업무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평화 경찰관.
- 선거 관리인이 고용하거나 주선한 사설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
- 선거일만을 위해 고용되지 않은 투표소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배치한 사설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

(선거법 § 18544, 하위 항목 (b)(1)-(4).)

여론 조사

투표소 내 선거 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표소에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사무원과 유권자만 투표소 구역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 14221.) 기표소 구역에 대한 근을 제한하면 유권자가 협박 없이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 2300, 하위 항목 (a)(4).)

투표 참관인(투표 참관인이라고도 함)은 선거 개표 과정을 관찰하는 개인입니다.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 2300 하위 항목 (a)(9)(A).)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관인은 "참관이 이루어지는 카운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건 안전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¹⁵, 주 국무장관이 카운티 선거 관리자들에게 COVID-19 및 관련 변종에 대한 주 및 지역 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유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참관할 수 있는 투표 참관인의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¹⁶

투표 참관인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투표 참관인은 선거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를 기록하거나 선거 절차를 방해하거나 기타 선거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메모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거법 § 2302.)

선거 절차 참관에는 투표소 직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선거법 § 2300, 하위 항목 (a)(9).)

그러나 투표 참관인의 지속적인 질문으로 인해 투표 관리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투표 관리자는 답변을 중단하고 추가 답변을 위해 해당 투표 참관인을 카운티 선관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위의

¹⁵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카운티 서기/선거관리국(CC/ROV) 각서 # 22233, '총선거'를 참조하십시오: 선거 참관 권리와 책임," (2022년 9월 19일), 1페이지,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2/september/22233jl.pdf>>.

¹⁶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2024년 투표 종사자 교육 기준, p. 3, <<https://elections.cdn.sos.ca.gov/poll-worker-training-standards/poll-worker-training-standards.pdf>>.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팀의 일원이 아니며 선거 관리관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 18575.) 불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동일 조항)

투표 참관인의 금지된 행위란 무엇인가요?

투표 참관인은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유권자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 18502, 18540, 18541, 18543, 18564.)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투표소 직원에게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질문하거나, 공식 업무 테이블이나 임시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테이블에 앉거나, 투표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당하게 가까이 서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¹⁷

투표 참관인은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반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 또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는 도로변 투표소, 투표소가 있는 건물 입구, 선거관리관 사무실 또는 위성 위치 등 야외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자의 기표에 관한 주제로 유권자와 대화하는 행위; 유권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 18541.) 또한 투표 참관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는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청각적으로 유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 18370, 18541.) 금지된 투표 참관인 지지에는 후보자의 이름, 초상 또는 로고, 투표 법안의 번호, 제목, 제목 또는 로고의 표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 정보가 포함된 버튼, 모자, 연필, 셔츠,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선거법 §§ 319.5, 18370.)

투표 참관인은 투표 자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 14240, 하위 항목 (b).) 또한 투표 참관인은 유권자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유권자 자격이 있는데도 유권자에게 투표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부정하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 18543.) 선거구 위원회의 위원만이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선거법 섹션 14240, 하위 섹션 (a)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한된 근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선거법 § 14240; see also 선거법 § 18543.)

투표 참관인은 선거 과정에 참여하거나 유권자의 신원 또는 투표용지 선택을 확인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우편투표, 준결승 공식 개표, 공식 개표, 재검표 과정을 참관하면서 유권자의 신원 /또는 투표지 선택을 확인하려는 시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유권자의 신원 /또는 투표지 선택을 확인하려는 행위는 형사 범죄입니다. (선거법 § 18562.5.)

마지막으로, 개인은 투표 참관¹⁸ 시 청원경찰, 사설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¹⁷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카운티 서기/선거관리국(CC/ROV) 각서 # 22233, '총선거'를 참조하십시오: 선거 참관 권리와 책임," (2022년 9월 19일), 3페이지,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2/september/22233jl.pdf>>.

¹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 카운티 서기/선거관리국(CC/ROV) 각서 # 22233, '총선거'를 참조하십시오: 선거 참관 권리와 책임", (2022년 9월 19일), 3페이지, <<https://elections.cdn.sos.ca.gov/ccrov/2022/september/22233jl.pdf>>.

정보 공지 2024-DLE-04
2024년 3월 5일, 대통령 예비선거
8페이지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문의해 주세요:

Rachelle Delucchi
선거 자문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916) 764-5934

Robbie Anderson
선거 자문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916) 216-6488

Luis Lopez, 국장 대행
법 집행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916) 210-6300